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윤서규의원외 7인

2. 제안이유

-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 (안 제11조)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이 일본식 용어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의회의 위상정립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품격을 높여 변경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으며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